

3. 지원기관(IT기업) 관리

- 지원기관 풀 등록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2014년 정보화사업 지원기관 풀에 등록
 - 등록된 지원기관은 신청기업과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만 정보화지원사업 수행
 - * 지원기관별 지원가능한 과제 수 : 최대 45개 과제(1,2,3차 포함)
- 정보화지원사업 수행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, 사업 수혜 실적,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일정 점수 미만의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

IV. 문의 및 연락처

기관명	부서, 연락처 (홈페이지)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경영정보화부, 02-388-0314, 0315, 0316 (www.tipa.or.kr)

III. 지원기관(IT기업) 풀(Pool) 등록

1. 지원기관(IT기업) 풀(Pool) 등록 요건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인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(고급기술자 2인 포함) 이상 보유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* 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(국민연금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) * 사업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(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) 제출(http://career.sw.or.kr 참조), 단, 기존참여인력 중 등급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
인프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정보화 시스템(ERP, CRM, GW, MIS, 전자무역솔루션, 원산지증명시스템 등)의 개발실적과 H/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보유기업 ○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-원산지증명시스템 연계 모듈 개발이 가능한 기업
사 업 실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(단일사업)의 관련분야 정보화시스템 개발 실적 각 2건과 500만원 이상 유지보수 실적(1년이상 기간) 각 1건 이상 보유 기업 * 중소기업(수요기업)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* 사업 완료실적은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관 *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(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) 제출 ○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 이상(유효기간은 사업공고일 기준) * 신용평가기관 : 한국신용평가정보, 한국기업데이터, 나이스D&B, 서울신용평가정보, 한국기업평가 ○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 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○ 부채비율 1,000% 미만인 기업

2. 지원기관(IT기업) 풀(Pool) 신청

- 접수기간 : 2014. 10. 13(월) 14:00 ~ 11. 12(수) 18:00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구비서류
 - * 관련양식은 <http://it.smba.go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신청방법 :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<http://it.smba.go.kr>)
 - * '14년도에 기 등록된 지원기관(IT기업)은 신청 불필요

2. 신청

- 접수기간 : 2014. 10. 13(월) 14:00 ~ 11. 12(수) 18:00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- 신청방법 :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화지원사업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(<http://it.smba.go.kr>)

3. 지원절차

①신청·접수 → ②사업수행계획서 제출 → ③심사평가 → ④원가계산
→ ⑤참여기업 선정 → ⑥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→ ⑦완료점검 및 사업완료

4.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(최대 5점)

- ① 정보화경영체제(IMS) 인증기업 (5점)
-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인증기업, 싱글PPM인증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,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기업, 방산(물자)업체,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(각 2점)

*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

5. 기타사항

-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
< 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>

지원유형	지원내용	지원조건
서버 일체형	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	최대 700만원 (50% 이내)
정보시스템 연계형	ERP 등 정보시스템과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모듈 구축 지원	최대 1,000만원 (50% 이내)

- *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 보유 기업에 한함
- * 모든 원산지관리시스템과의 연계모듈 구축 지원

3. 지원규모(예산) : 100여개 기업(10억원)

II. 신청자격 등

1.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< 지원제외대상 >

-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
-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,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
 - * 금융질서문란자란, 신용정보관리규약(전국은행연합회)에 따라 연체, 대의변제·대지급·부도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
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구축 지원사업(4차) 시행계획 공고

한-EU 및 한-미 FTA 발효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를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구축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10. 13

중소기업청장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 정보 관리 도모

2. 지원내용

-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지원 및 활용교육 등
 - 시스템 구축비용(50% 이내, 최대 700~1,000만원) 및 사전교육 등